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. 9. 14 선고 2017가단4894 판결 [토지인도 및 건물철거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7. 9. 1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에게 아산시 C대 52㎡ 중 별지 도면 표시 31, 32, 33, 34,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다) 부분 34㎡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, 그 대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박연주

별지